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51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○공소청

(000-0000-0000)

임 호

형 호 . . 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공소청

제 목 : **임시조치청구(아동학대)** 검 사 ㊞

행위자	성명	()	
	주민등록번호	(세)	
	직업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거		
	보조인(변호인 등)		

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.

[] 1. **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1호)

[] 2. **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,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2호)

기준지: []주거, []학교·학원, []보호시설, []병원,
[]그 밖의 장소()

[] 3. **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3호)

[] 4. **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4호)

[] 5. **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5호)

[] 6. **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6호)

[] 7. **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**(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제1항제7호)

피해아동등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			
	변 호 사			
범죄사실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				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	판 사		㊞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